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국민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민연금 수급권 보호 강화를 위해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 상실 기준을 완화하고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제도가 실효성이 있도록 보완하는 등 국민연금 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임의(계속)가입자 체납 시 자격 상실 기준 완화(안 제21조)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의 체납으로 인한 자격 상실 기준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하여 규정함

나. 실업으로 인한 추가 가입기간 보험료 납부 개선(안 제25조의3)

실업으로 인한 추가 가입기간 보험료의 과오납금이 있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반환하지 않고 미납회차를 충당하도록 절차 개선

다.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제도 실효성 제고(안 제72조의2)

동명이인 등으로 제도 실효성 저하, 공개항목에 업종(직업)을 추가하여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함으로써 체납 방지 효과 및 징수율 제고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본문 중 “3개월”을 “6개월”로 한다.

제25조의3제4항 전단 중 “반환하여야 한다”를 “반환하거나,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 연금보험료 중 미납된 부분에 충당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반환하는”을 “반환하거나 충당하는”으로, “반환한다”를 “반환하거나 충당한다”로 한다.

제72조의2제4항 중 “체납기간”을 “체납기간, 업종(직업)”으로 한다.

별표 2의3 제2호구목을 누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기초연금법」 제11조에 따른 조사·질문에 관한 자료
별표 3 제1호가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

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
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연금보험료 체납에 따른 자격 상실) 법 제12조제3항제5호,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 따라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연금보험료의 체납기간은 <u>3개월</u> 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연금보험료 체납에 따른 자격 상실) ----- ----- ----- ----- <u>6개월</u> -----.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① ~ ③ (생략) ④ 공단은 신청인이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된 경우에 해당 가입기간의 추가 산입을 취소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 납부한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u>반환하여야</u> 한다. 이 경우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u>반환하는</u>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u>반환하거나,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 연금보험료 중 미납된 부분에</u> <u>충당할 수 있다.</u> --- <u>반환</u>

전단에 따른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신청인이 납부한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에 더하여 <u>반환한다</u>.	<u>하거나 충당하는</u> ----- ----- ----- ----- ----- <u>반환하거나 충당한다</u>.
제72조의2(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① ~ ③ (생략) ④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7조의2제4항에 따라 체납자의 인적사항등을 공개할 때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나이, 주소, 납부기한, 체납액, <u>체납기간</u>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2조의2(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u>체납기간, 업종(직업)</u>-----.

< 의안 소관 부서명 >

연 락 처	(044) 202 - 3604